

[공고 제2025-4-002]

2025년 가족센터 종사자 공통역량교육 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요청서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시 사업범위, 예산 등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추후 입찰 공고 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2025년 가족센터 종사자 공통역량교육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12.

다. 추정금액 : 금198,000,000원(금일억구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2) 사전공개

가. 사전공개기간 및 의견등록 마감일시: 2025.1.23.(수) ~ 2025.2.4.(화)

나. 사전공개 의견등록

- www.kihf.or.kr(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www.g2b.go.kr(나라장터)

3)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 및 계약 문의 >

- 과업관련 : 이은진(02-3479-7741), eunjin@kihf.or.kr
 - 계약관련 : 박정서(02-3479-7653), emotion@kihf.or.kr
- ※ 메일로 의견 송부 시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금품, 사례 또는 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등 수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적발 시 법에 의거하여 제공자 역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계약 등 청탁 X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인·허가, 면허처리」 등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직무관련 대가 수수 X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사교·의례 예외규정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음식물 3만원 (식사, 다과, 음료 등)
- 선물 5만원** (금전, 유가증권 이외 물품)
- 경조사비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등)

*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 (지정된 명절 기간은 30만원까지 가능)
**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축의금, 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은 가능

당신의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



온라인 www.kihf.or.kr (홈페이지 내 신고서 작성) **찾라인** E. clean@kihf.or.kr T. 02-3479-7600 (내선 7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임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